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3호 2021. 4. 22(금)

## 훈 령

- 남원시 자치법규 발령 목록 ----- 1
- 남원시 훈령 제427호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 2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92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29
- 남원시 공고 제2022-9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 신정동 오뚜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36
- 남원시 공고 제2022-937호 남원 공시송달공고----- 40
- 남원시 공고 제2022-9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소로2-194선)사업시행자·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남원 신정동 오뚜그란데 2차 디아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43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발령 목록

- 총 1건 (훈령 1) -

□ 훈령 : 1건

공포 번호	훈령명	제·개정 내용	비고
427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	가. 목적, 정의, 규정의 효력 (안 제1조~제3조) 나. 사업, 휴관일, 이용시간, 개인정보 관리, CCTV 설치 규정 (안 제4조~제9조) 다. 놀이 체험실 이용 규정 (안 제10조~제15조) 라. 영유아 프로그램실 이용 규정 (안 제16조~제22조) 마. 장난감 도서관 이용 규정 (안 제23조~제41조) 바. 시간제 돌봄(보육)실 지원사업 규정 (안 제42조~제48조) 사. 시설물 대관 사항 규정 (안 제49조~제54조)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2일

남원시 훈령 제 427 호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란 센터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개인회원”은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남원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 나. “단체회원”은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남원시 소재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수강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놀이체험실”이란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5. “프로그램실”이란 별도의 강사가 대소집단으로 놀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놀이 공간을 말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참여할 수 있다.
6.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육아관련 용품이 필요한 회원에게 대여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시간제 돌봄(보육)실”이란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 단위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규정의 게시 및 개정) ① 본 규정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센터 게시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센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센터가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황 규정과 함께 센터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④ 회원이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 탈퇴를 요청 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된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장 운영 및 개인정보 관리 등

제4조(사업) 센터는 지역 사회 내 가정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놀이체험 공간 제공
2. 장난감 등 대여

3. 영유아 및 부모 프로그램
4. 시간제 돌봄
5. 기타 보육관련 행사를 위한 시설물 대여
6. 그 밖의 남원시 시책사업 등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일·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소독 또는 대청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날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휴관이 불가피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과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 등은 화요일~토요일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제7조(회원제 운영)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관리) ①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본인식별 및 본인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센터 프로그램 및 이벤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 ② 회원은 필요시 센터에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④ 이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 ⑤ 회원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완전히 삭제되며,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9조(CCTV 설치)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유아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놀이 체험실 이용

제10조(놀이 체험실 정의) “놀이체험실”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제11조(이용 시간) ① 놀이 체험실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 ② 이용시간은 1시간 내로 제한한다.
- ③ 회차별로 이용시간이 구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회: 10:00~10:50 / 2회: 11:00~11:50 / 3회: 13:00~13:50 / 4회: 14:00~14:50 / 5회: 15:00~15:50 / 6회: 16:00~16:50

제12조(이용 대상 및 정원) ①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아놀이체험실: 만 0세 ~ 만 2세미만
- 2. 유아놀이체험실: 만 2세 ~ 만 6세미만

②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이용정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 영아 놀이실

가. 개인회원: 1회당 20명

나. 단체회원: 1회당 20명

## 2. 유아 놀이실

가. 개인회원: 1회당 40명

나. 단체회원: 1회당 40명

③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야 한다.

제13조(이용 규칙) ① 놀이실을 이용할 때는 유선 예약 후 이용하며, 당일 현장 입장 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놀이실 이용이 불가하다.

② 보호자는 함께 방문한 영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③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놀이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④ 물품 파손 분실의 경우 동일 상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구입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⑤ 퇴실 전에는 놀잇감을 정리 후 퇴실한다.

⑥ 센터 내에서 행사가 있는 날은 놀이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이용료는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으로 한다. 1회 이용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제15조(취소 및 결석) ① 예약 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1일전까지 유선연락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② 사전연락 없이 예약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주일간 이용을 제한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예약 취소 등으로 이용하지 않고 환불 요청 시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4장 영유아 프로그램실 이용

제16조(영유아 프로그램실의 정의) “프로그램실”이란 별도의 강사가 대소집단으로 놀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놀이 공간을 말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이용 대상) ① 프로그램실 이용대상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연령별로 상이하며, 놀이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동반한다.

② 보호자는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인정한 기타 양육자(성인)가 함께 방문함을 허용한다.

제18조(이용 시간) ① 프로그램별로 이용시간이 상이하며, 원활한 놀이 진행을 위해 시작시간 10분전 입실한다.

② 프로그램 각 종류에 따라 3~5회로 진행된다.

제19조(이용 정원의 제한)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이용정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개인: 1회당 최대 16명
2. 단체: 1회당 최대 16명

제20조(프로그램실 이용 규칙) ① 프로그램실을 이용할 때는 유선예약 후 이용가능하며, 당일 현장 입장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함께 방문한 영유아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서 책임지지 않는다.

③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④ 물품 파손·분실의 경우 동일 상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⑤ 센터 내 행사가 있는 날은 프로그램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프로그램실 이용료) ① 이용료는 1회 10,000원 이하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교재비, 재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제22조(취소 및 결석) ① 예약 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최소 이용 1일전까지 취소해야 한다.

② 사전연락 없이 예약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된다.

③ 프로그램실 이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구분	규정
5일 전 취소할 경우	100% 환불
당일~4일 전 취소할 경우	재료비 등 구입한 비용을 제외 후 환불

## 제5장 장난감 도서관 이용

### 제1절 장난감 도서관 회원 관리

제23조(장난감 도서관 회원의 자격)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2. 취학 전 자녀(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
3. 단체회원은 남원시 소재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장난감 도서관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 대상자는 센터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후,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 및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구분	구비서류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② 시장은 구비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 서류를 반환한다.

제25조(장난감 도서관 회원 유지기간) ① 회원 유지기간은 회원가입일로부터 영유아의 취학 전 기간(취학유예기간 포함)까지로 한다.

② 연회비 면제대상자의 경우 회원자격 유지기간으로 적용한다.

③ 기존 회원일 경우 1년경과 후 연회비 납부 시 자동 연장된다.

제26조(장난감 도서관 회원카드 관리 등) 신규 가입 시 회원카드는 1회 무료 발급한다.

제27조(장난감 도서관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정비,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28조(장난감도서관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센터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카드는 본인 및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외에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다.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경우 회원 자격이 중지된다.

③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통지한다.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 재발급의 경우 일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대여물품은 센터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한다.

⑤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⑥ 대여물품 대출 후 지정일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여 정지 기간을 부여한다.

⑦ 대여물품을 대여 받은 후, 물품의 일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변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회원이 부담한다. 대여물품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⑧ 센터 이용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회원은 센터에 보호자 없이 영유아만 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보호자 동반 없이 센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⑨ 센터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⑩ 센터는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9조(장난감도서관 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자
6. 센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7. 센터의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8.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제30조(회원 탈퇴) ① 회원탈퇴는 언제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탈퇴 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회원카드 반납 및 회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의에 의해 회원을 탈퇴한 경우 센터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1조(회원자격 취소)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1. 가입 후 납원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 센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
5.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6. 센터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7. 신청서 및 이용안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영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 8. 그 외 센터 및 타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경우

제32조(회원 재가입)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② 제31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다만, 제31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2절 장난감 도서관 이용

제33조(이용시간)장난감 대여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점심시간 (12:00~13:00)은 제외한다.

제34조(대여신청) ①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③ 장난감 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대여 시 대여 구성품의 개수 및 상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대여한다.

제35조(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① 대여 개수는 회원 1인당 2점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 ②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7일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이용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1회 연장 시 대여기간은 총 15일간으로 한다.
- ③ 동일 장난감 등은 4주 이내 재 대여가 불가능하다.

제36조(대여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장난감 등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 2. 대여 받는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이용제한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대여 장난감의 총 연체일수가 1점당 30일 이상이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가 중지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2. 장난감도서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제37조(이용금액 및 환불) ① 회원은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②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회원카드 반납 및 탈퇴서 접수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연회비를 반환 신청 시 회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회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 분	규 정
가입 당일	100% 환불(단, 대여회수가 0 일 경우)
가입 후 1개월 이내	50% 환불
가입 후 2개월 이후	환불 불가

제38조(연회비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별표1의 보훈대상자
- 5.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제39조(연체료)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여품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반납) ①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물품의 내용과 청결상태, 파손·훼손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

② 반납의 경우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할 수 있다.

③ 대여물품 전체가 모두 반납되어야 다음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물품만 반납하거나, 파손된 대여품이 있는 경우, 대여물품 보관주머니 분실 시에는 미반납 처리한다.

제41조(배상처리) ①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발생한 변상가격을 해당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대여 중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회원은 대여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대여횟수 구분	변상 규정
1회~10회	구매가격의 100% 변상
11회~50회	구매가격의 70% 변상
51회~100회	구매가격의 50% 변상
101회 이상	구매가격의 30% 변상

③ 대여물품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가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은 지정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장 시간제 돌봄(보육)실 지원 사업

제42조(정의) “시간제돌봄”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영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3조(이용시간) ① 센터 내 시간제 돌봄실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10:00~17:00로 한다.

②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예약하고 이용한다.

③ 월 이용시간은 80시간으로 이용한다. 다만, 월 이용시간이 80시간 넘을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가능하다.

④ 원활한 보육실 이용을 위해 예약시간에 맞춰 입실·퇴실을 한다.

제44조(이용 대상) ①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이용한다.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일반아동으로 분류하여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이용 정원) 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②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한다.

③ 시간제 보육실 1개반 당 13.2㎡ 이상으로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21.45㎡ 이상 확보한다.

④ 1개 반 기준 교사 1명 당 총 정원 3명으로 한다. 총 정원은 동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제46조(이용 규칙) ① 시간제 돌봄을 이용할 때는 유선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② 최초 이용 시 돌봄실에 별지 제5호서식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 돌봄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호자 란'에 기재된 순위대로 연락을 하고,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 수송한다.

④ 해당 유아의 귀가 시 '보호자란'에 기재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영유아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시간제보육 제공자(담당교사)가 판단하는 경우 영유아를 인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 영유아의 인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음주 만취, 정서적 불안정의 경우를 말한다.

⑤ 이용자는 등원 시 영유아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을 교사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투약 시에는 반드시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투약이 가능하다.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중독, 그 밖에 보육과정에서 영유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질환 또는 부상이 있거나 그 발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시간제 보육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⑦ 시간제 돌봄(보육)실에서는 간식 및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기저귀, 여벌옷, 간식 및 이유식 등을 개별 지참한다.

제47조(이용료) 시간당 4천원으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천원으로 이용한다.

다만, 이용료는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8조(예약 및 취소) ①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② 예약시간 연장은 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시간만 변경 가능하다.
- ③ 당일 예약 변경은 이용자가 예약종료시간 20분전까지 연락하여야 한다.

### 제7장 시설물 대관

제49조(정의) “시설물 대관”이란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내 자산 시설물을 활용해 공공성을 포함한 보육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0조(적용범위)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로 한다.

제51조(대관 이용료)

구분	단위	이용료	비고
가. 프로그램실	1시간	10,000원	1.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 다목적 홀	1시간	50,000원	
다. 냉·난방비	프로그램실   1시간	5,000원	
	다목적홀   1시간	20,000원	
라. 기본음향	1회 마이크 4개(유선2,무선2)	없음	
마. 유선마이크	개당/회	6,000원	
바. 무선마이크	개당/회	20,000원	
사. 무대조명	1시간	30,000원	
아. 빔프로젝트	1회	30,000원	

제52조(대관 이용료 감면) 문서로 요청받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 1. 남원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비영리행사
- 2. 센터업무와 관련이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대관신청 및 취소)

- 1. 대관신청은 이용일 최소 일주일 전에 유선으로 문의 한 후, 별지 제7호서식 대관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신청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대관승인 및 취소) ①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관사용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대관 승인된 행사가 공공질서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시설물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제24조 관련)

신 청 자	성 명 (기관명)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법인, 법·단 <input type="checkbox"/> 가정	
	주 소	남원시			
	E-mail	@			
	연 락 처	(063)	/ (휴대폰)		
취 학 전 녀	영유아명	생년월일	취학전 기간	비고	
			~ . 2.28.까지		
구 비 서 류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이내, 영유아자녀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분증, 감면해당자 관련서류				
회 원 기 간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영유아의 취학전 기간 까지)				
연 회 비	<input type="checkbox"/> 20,000원(개인) <input type="checkbox"/> 50,000원(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이용료 면제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⑤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b>【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b>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전화번호 등 · 수집목적 :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회원 탈퇴까지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가 공유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자료 수집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함           </div>				
<b>아이맘행복누리센터 장난감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b>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뒤)

□ 장난감 도서관 이용안내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연회비는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규정
가입 당일	100% 환불(단, 대여회수가 0 일 경우)
가입 후 1개월 이내	50% 환불
가입 후 2개월 이후	환불 불가

-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은 대여반납이 제한됩니다. \* 휴관일: 일·월요일, 공휴일
- 대여물품을 대여 받은 후 발생한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대여·반납시 대여 구성품의 개수 및 상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대여·반납합니다.
- 대여 개수는 회원 1인당 2점 이내,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7일간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동일 장난감등은 4주 이내 재 대여가 불가능)
- 대여물품 기한내 반품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품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난감 이용시 건전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 대여 중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그 상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합니다.

대여횟수 구분	변상 규정
1회 ~ 10회	구매가격의 100% 변상 또는 동일장난감
11회 ~ 50회	구매가격의 70% 변상 또는 동일장난감
51회 ~ 100회	구매가격의 50% 변상 또는 동일장난감
101회 이상	구매가격의 30% 변상 또는 동일장난감

- 대여물품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가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5호서식] (앞)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간제돌봄(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제46조 관련)

영유아명	(남,여)	영유아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유선) (H.P)	
이용목적				
보호자	순위	영유아와의 관계	이름	연락처
영유아 특이사항 (알레르기, 습관 등)				
이용시간	월	일	시간 ( : ~ : )	

### 운영 안내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시간 및 단가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가구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월 80시간 · 시간당 <b>1천원</b>	· 월 80시간 · 시간당 <b>4천원</b>	
예약	·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반환)		
개인물품	· 기저귀, 여벌옷, 간식 등 개별지참		



[별지 제6호서식]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연회비 반환 신청서 (제37조 관련)**

이용시설			
납부일자			
신청자		교육시간	
반환금 입금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전화번호		E-mail	
반환신청 사유			
실제납부 이용료	₩	(금	원정)
반환이용료 (시설에서 산정기재)	₩	(금	원정)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시설 운영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표 1]

**연회비 면제 대상 보훈대상자 (제38조제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연회비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시 공고 제2022-924호

##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반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2일  
남 원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9	반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산내면 부운리 240번지 일원	69,344	-	69,344	남원시고시 2014-17호 (2014.03.14)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2	832	16,282	-	-	-	1	721	14,863	1	111	1,419
중로	1	111	1,419	-	-	-	-	-	-	1	111	1,419
소로	1	721	14,863	-	-	-	1	721	14,863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3	국지 도로	111	산내면 부운리 661천	산내면 부운리 216-10잡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14-17호 (2014.3.14.)	
기정	소로	2 (2)	931 (1)	8	주간선 도로	16,390 (721)	소로2-924 산내면대정리 563-1도 (산내면 부운리 233도)	덕동리경계 산내면 덕동리 산215-16임 (산내면 부운리 산92-9도)	일반 도로	대정 취락 서측 경계	전라북도고시 제2010-200호 (2010.8.13.)	지방도861호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 ( )는 지방도 861호선 중 반선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임

☑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노외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38번지 일원	2,131	감)2,131	-	남원시 고시 제2014-17호 (2014.3.14)	
기정	2	노외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42-6번지 일원	1,288	-	1,288	남원시 고시 제2014-17호 (2014.3.14)	
기정	3	노외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16-1번지 일원	4,399	-	4,399	남원시 고시 제2014-17호 (2014.3.14)	
기정	4	노외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16-10번지 일원	2,375	-	2,375	남원시 고시 제2014-17호 (2014.3.14)	
신설	5	노외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산92-3번지 일원	-	증)2,580	2,580	금 회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외주차장	시설폐지	· 관광객들의 여행패턴 변화로 대중교통이용이 줄어들어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 폐업에 따른 기반시설 폐지
5	노외주차장	금회신설	· 산내면 반선지역을 통해 지리산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 신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9,344		산내면 부운리 240번지 일원	69,344	-	69,344	
1	33,728	①	산내면 부운리 238번지 일원	18,810	감)9,270	9,540	녹지용지(①→①,⑪로 세분)
		②	산내면 부운리 215-3번지 일원	2,131	-	2,131	주차장→관광휴양시설용지
		③	산내면 부운리 215-9번지 일원	2,356	-	2,356	상업용지
		④	산내면 부운리 235-7번지 일원	447	-	447	주차장
		⑤	산내면 부운리 234-2번지 일원	2,200	-	2,200	관광휴양시설용지
		⑥	산내면 부운리 239-2번지 일원	2,198	-	2,198	관광휴양시설용지
		⑦	산내면 부운리 240번지 일원	3,792	-	3,792	상업용지
		⑧	산내면 부운리 242-6번지 일원	1,288	-	1,288	주차장(도시계획시설)
		⑨	산내면 부운리 242-17번지 일원	506	-	506	보건진료소
		⑩	산내면 부운리 산92-11번지 일원	-	증)2,580	2,580	주차장(도시계획시설) 신설
		⑪	산내면 부운리 산92-3번지 일원	-	증)6,690	6,690	녹지용지(①→①,⑪로 세분)
2	19,334	①	산내면 부운리 216번지 일원	327	-	327	녹지용지
		②	산내면 부운리 216-1번지 일원	4,399	-	4,399	주차장(도시계획시설)
		③	산내면 부운리 216-9번지 일원	1,451	-	1,451	마을하수도
		④	산내면 부운리 산98-4번지 일원	3,587	-	3,587	녹지용지
		⑤	산내면 부운리 216-10번지 일원	2,375	-	2,375	주차장(도시계획시설)
		⑥	산내면 부운리 218-3번지 일원	7,195	-	7,195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로	16,282	도로	산내면 부운리 215-2번지 일원	16,282	-	16,282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관광휴양시설용지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 2	1-⑤ 1-⑥ 2-⑥	1-② 1-⑤ 1-⑥ 2-⑥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2. 상업용지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	1-③ 1-⑦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 3-1. 공공시설용지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1, 2	1-②	1-④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공중화장실, 파출소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중 하수등 처리시설	
		1-④			
	1-⑧	1-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②	2-②			
	2-③	2-③	건폐율	20% 이하	
	2-⑤	2-⑤	용적률	4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2층 이하	

### 3-2. 공공시설용지(보건진료소)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	1-⑨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보건진료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 4. 녹지용지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 2	1-① 1-⑪ 2-① 2-④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차량진출입구는 1필지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지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공동주차장 (11,089m<sup>2</sup>) 운영

**2. 공람 기간 :** 신문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토, 공휴일 제외)

**3.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제출서 양식)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도서 :** “실음생략”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민 등의 의견제출서

과업명	남원 도시관리계획(반선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240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202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고 제2022 - 935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인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4월 22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3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퍼스트시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신정동 116-13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구 분	결 정 조 서		개 설(조성) 계 획			시 행 구 간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중로3-33	13~18	363	13~18	363	5,426	신정동 95번지 ~ 신정동 155-9번지	폭원확장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부터 ~ 2023년 10월 05일
5. 사 업 비 : 839백만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7.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9.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9,009	5,426					
1	95	전	169	15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96-2	전	84	8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97-1	전	778	77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98-1	전	33	33	양*호 양*란 양*호 양*임 양*식 양*호 양*순 이*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길 3*,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0길 *1, 에이동 3*03호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9번길 18, 4**호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길 1* 전라북도 남원시 칠**길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6*, 비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로 7*길 2*-6 전라북도 남원시 칠**길 *4			
5	101-1	전	311	31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102	전	1,111	66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106-1	전	166	16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106-2	전	650	2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113-2	답	93	9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113-4	답	8	8	(주)에버종합건설	익산시 익산대로 124			
11	116-18	임야	334	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116-20	임야	115	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3	116-29	임야	87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	116-57	임야	2,559	6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5	116-138	전	2,065	79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6	116-139	임야	10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	116-140	임야	3,355	50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8	116-142	임야	2,577	3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9	116-143	전	298	29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0	116-145	전	362	19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1	116-152	전	109	2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	116-153	전	2,887	6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3	116-159	전	83	1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	155-6	답	390	3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	155-8	답	118	118	박*진	전라북도 남원시 충*로 3*0, 10*동 1*03호			
26	155-9	도로	75	75	김*권	남원 주천면 용궁리			
27	155-11	도로	9	9	국(건설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사

- 지장물 없음



남원시 공고 제2022 - 93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19. ~ 2022. 5. 04.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4.18.)	김○규	남원시 왕정동 373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왕정동 373-4	주1 목조 주택 16㎡ 부1 목조 축사 12㎡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8.

남 원 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 남원시 공고 제2022 - 9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소로2-19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2차 디아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소로2-194호선)사업인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2차 디아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4월 22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소로2-194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신정동 오투그란데 2차 디아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신정동 116-1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구 분	결 정 조 서		개 설(조성) 계 획			시 행 구 간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소로2-4	8	90	8	90	809	왕정동 513-7번지 ~ 신정동 116-7번지	
소로2-194	1.4~2.8	155	1.4~2.8	155	403	신정동 116-11번지 ~ 신정동 116-4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부터 ~ 2023년 11월 16일
- 5. 사 업 비 : 379백만원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 7.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 8.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 9.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면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19필지	5,155	1,212					
1	신정동	37-4	대	27	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신정동	106-2	전	650	17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신정동	107-3	대	799	11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신정동	108-3	도로	36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신정동	108-4	전	13	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신정동	108-5	도로	95	95	서*치	남원시 왕정동 5*2			
7	신정동	116-32	임야	10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신정동	116-33	대	254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신정동	116-77	대	467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신정동	116-151	전	1,578	34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1	신정동	116-152	전	109	7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신정동	116-156	전	1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3	신정동	116-157	도로	195	195	국 기획재정부				
14	신정동	116-158	도로	91	91	조*환	남원시 왕정동 4*0			
15	왕정동	513-28	도로	18	18	국 기획재정부				
16	왕정동	513-29	답	7	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	왕정동	617-1	도로	762	3	국 건설부				
18	왕정동	617-2	도로	39	39	국 건설부				
19	왕정동	617-3	도로	4	4	국 건설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조서

- 지장물 없음

